

# 2026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0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기술가치 입증을 지원하여 금융조달, 기술거래 등 기술사업화 촉진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사업내용: 기술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평가 비용 지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나이스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 지원규모: 6개사 내외
- 지원내용: 기술가치평가 또는 기술력평가 중 택1 지원 ※ 공급액 기준, 부가세 제외

구분	세부내용	활용방안	지원한도
택1	기술가치 평가 (정식평가) - 기술이 얼마나 가치있는지 금액으로 산정하는 평가 - 기술성·시장성·권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자유치, 융자, 현물출자, 기술거래 등 공식 증빙이 필요할 때 활용	1,500만원 (3개사 내외)
	기술력 평가 (약식평가) - 사업성·역량 등을 분석하여 기술의 경쟁력과 사업성이 어느정도인지 기술수준을 등급으로 보여주는 평가	투자 참고, 기술 수준 진단 등 간단한 비교·판단이 필요할 때 활용	500만원 (3개사 내외)

### [기술평가의 목적과 용도]

목적	설명
기술 매매·거래	- 기술을 팔거나 라이선스 계약할 때 가격 기준 설정 필요
현물출자	-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를 위한 가치 확인
금융·투자	- 은행이나 투자자가 기술가치를 판단하여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가능
기업전략	- 신사업, 분사, 장기전략 수립 시 기술가치 판단 필요
세무·회계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처리에 기술가치 필요
소송 분쟁	-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기술 가치가 증거가 됨
기업 청산	- 기업의 파산·구조조정 시 기술자산 가치 판단 필요
기타	- 기술 기반 특례상장 활용 가능

## 2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출원, 등록)특허를 보유한 용인 소재 본사(본점)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는 별첨1 참고
- 제외대상
  - 2026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기술 및 기술제품으로 기술 가치평가를 지원받은 기업(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등

## 3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5인에 의한 선정평가(서류평가) 진행 및 지원기업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 결격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함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후 기업 실사(사업장 소재지, 제출서류 진위 여부 등 확인) 및 중복수혜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이상 없을 시 최종 지원기업 통보

## □ 평가기준표

### ○ 선정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기술평가 추진 필요성 등	20점
기업(기술) 역량	- 보유 기술, 특허의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40점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20점
<b>총 계</b>		<b>100점</b>

### ○ 선정평가 가감점 항목

구 분			점수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점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1점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점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점
		3천만원 이상	-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이 공고기간 내에 포함될 경우 인정 (입주계약서, 여성기업, 우수기업 인증서 등)

##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가치평가(정식평가)와 기술력평가(약식평가)의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시기는 상이함

## □ 지원금 지급

## ○ 지급방법 및 시기

## - 기술가치평가(정식평가)

- (1차) 협약체결 후 총 기술가치평가 비용의 50% 이내 선지급

※ 단, 기술평가기관에 평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선지급이 가능하며, 기술평가기관과의 계약서, 착수금 지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선지원금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필수

- (2차) 기술평가 완료 이후 결과·집행보고서 검토를 거쳐 잔액 지급

※ 협약종료일까지 기술평가 미이행 또는 협약 해지 시 잔액 지급 불가 및 선지원금 전액 환수

## - 기술력평가(약식평가): 사업 종료 후 일괄 지급(100%)

## ○ 지급처: 지원기업 직접 지급 (기업명의 사업비통장)

## ○ 지급조건: 협약기간 내 기술평가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선지원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및 기술평가기관과의 계약서 및 착수금 지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이체수수료, 보험 수수료 등은 지원금 미포함

## 5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1월 20일(화) ~ 2월 20일(금) 16시까지

※ 마감일에 신청이 몰려 접속이 어렵거나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 전)

※ 어떠한 사유로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 온라인 접수 시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 등록 필요

※ 온라인 접수 외 방문, 메일, 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문의처: 사업화지원팀(031-323-4675, dykim@ypa.or.kr)

## 6

### 유의사항(필독)

---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공인 기술평가기관과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평가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확인 후 진흥원이 참여 기업에 직접 지급함

□ 기술가치평가(정식평가)의 경우 협약체결 후 총 기술가치평가 비용의 50% 이내 선지급 가능

※ 단, 기술가치평가기관에 평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선지급이 가능하며, 협약종료일까지 기술가치평가 미이행 또는 협약 해지 시 선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선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필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제출서류	부수	발급처	비고	
필수	1	사업계획서	1부	진흥원 양식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붙임 중 신청분야(정식평가, 약식평가)에 한하여 1부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협약서	각 1부	진흥원 양식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한 모든 인원 서명 후 제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협약서는 1개의 파일로 제출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 정부24	- 본점은 관외 지역이나 용인 내 공장이 소재할 경우, 공장등록증(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도 함께 제출
	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홈택스, 정부24	-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5	2025년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必)	1부	홈택스, 정부24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확인본으로 제출 - 결산 이전인 법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25년 부가세 신고 必 -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6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 정부24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7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 정부24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영업소)에 주사업장 표기
	8	(평가기관) 견적서	1부	-	- 공인기술평가기관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내 기관명을 통해 공인기술평가기관 여부 파악 예정
선택	9	특허명세서	1부	-	- 기술가치평가(정식평가) 신청 시 평가 대상 기술(특허)에 대한 특허명세서 제출
	10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11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 인증서,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자격 상실 및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택서류는 해당 시 제출, 미제출 시 해당 평가점수 부여되지 않음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1부.

2.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2026년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전략산업팀
2		기계·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지원	
3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4	마케팅·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판로지원팀
5		마케팅 지원	
6		해외지사화 지원	
7		해외물류비 지원	
8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9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10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인프라지원팀	
12	사업화 지원	인증·지식재산 지원	사업화지원팀
13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4		시제품 제작 지원	
15		디지털 전환 지원	
16		기술가치평가 지원	
17	사업화 지원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전략산업팀
18		반도체 소·부·장 기술 이전 및 실증 지원	
1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20	사업화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인프라지원팀
2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IP-인증지원	
23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24	창업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25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6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